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 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자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사항]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 (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계약기간)을 급여 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 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 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8.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 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0.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3)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5)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 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 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 항목	금 액	내 역
식 비(경관식 포함)	1일 = 10,500원	1식 x 3,500원
간 식 비	1일 = 1,800원	900원 x 2회
상급 침실	월 = 600,000원	1일 x 20,000원 x 30일
이. 미용	무 료	자원봉사 활용

[계약의 해지]

■ 입소자가 입소 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지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⑥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 ⑦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 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⑧ 장기 부재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지

-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 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 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 조치에 대한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서비스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5)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6)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7) 입소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8)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